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인 국립식량과학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밀연구팀의 존속기한을 2023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8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5명(7급 1, 8급 1명, 연구사 2명, 지도사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1, 7급 1명, 연구관 2명, 지도관 1명)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관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1명, 8급 1명, 연구사 1명)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 10명(6급 3명, 7급 4명, 8급 1명, 연구관 2명)의 존속기한을 2023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5년 6월 24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립식량과학원의 운전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공업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00. ~ 6.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연구정책과·연구운영과·연구성과관리과·농자재산업”을 “연구정책과·연구개발과·연구관리과·농자재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운영과장”을 “연구개발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성과관리과장”을 “연구관리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총괄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대응

10.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운영 및 출연금 정산

11.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용 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별표 3 중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2”를 “1”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44”를 “45”로 하며, 농업연구관 1 다음에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를 신설하고,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3”을 “22”로 하며,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8 다음에 “농촌지도관 1”를 신설하고, 농촌지도사 “25”를 “24”로 한다.

별표 5 중 행정주사 “4”를 “5”로 하고, 행정주사보 “8”을 “7”로 하며, 농업연구관 “81”을 “80”으로 하고, 농업연구사 “249”를 “250”으로 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보 “3”을 “4”로 하고, 운전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 7 중 공업서기보 “3”을 “4”로 하고, 운전서기보 “10”을 “9”로 하며, 농업연구관 “74”를 “75”로 하고, 농업연구사 “160”을 “159”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1항 중 “2023년 8월 31일”을 “2025년 8월 31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4명(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1명),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각각 2025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

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 별표 5의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1명, 별표 7의 행정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원 2명(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수의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농촌지도관 1명), 별표 5의 정원 2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별표 7의 정원 1명(농업연구관 1명)은 2026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6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농촌지도사 1명, 별표 5의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별표 7의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연구정책국) ① (생략)	제7조(연구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연구정책국에 <u>연구정책과 · 연구운영과 · 연구성과관리과 · 농자재산업과</u> 및 첨단농자재육성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첨단농자재육성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전산사무관 · 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연구관 · 보건연구관 · 환경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② ----- <u>연구정책과 · 연구개발과 · 연구관리과 · 농자재산업</u> ----- ----- ----- ----- ----- -----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연구운영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④ <u>연구개발과</u> 장----- -----.
1. 삭제	
2. <u>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및 사업운영 총괄</u>	<삭제>
3. <u>연구개발사업 과제</u> 의 공모	<삭제>

4. 삭 제

5. (생 략)

6. 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한
관리·평가의 총괄

7. ~ 15. (생 략)

⑤ 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1. ~ 6. (생 략)

7. 삭 제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⑥ 삭 제

⑦ ~ ⑨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15. (현행과 같음)

⑤ 연구관리과장-----
-----.

1. ~ 6. (현행과 같음)

8.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총괄

9.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관리 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대응

10.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운영 및 출연금 정산

11. 연구데이터 수집·공유·활
용 계획 수립 및 지원 총괄

⑦ ~ ⑨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3호 농촌
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밀연구팀은 2023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 제3조 (생 략)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
원 5명(행정사무관 · 사서사무
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명, 행정주사 · 공
업주사 · 농업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주사 · 농업연구사 또
는 농촌지도사 1명, 농업주사 1
명,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 별표 5의 정원
6명(공업주사 1명, 행정주사보
2명, 행정서기 · 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기 1명, 농업연구관
2명),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

구의 존속기간) ① -----
----- 20
25년 8월 31일-----.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4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3의 정
원 4명(행정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신
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
도사 1명, 농업주사 1명, 행정주
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 별표 5의 정원 4명(공업주
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
기 · 공업서기 또는 식품위생서
기 1명, 농업연구관 1명), 별표
7의 정원 2명(행정주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각각 2025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5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
는 정원은 각각 별표 3의 행정

사보 1명, 농업연구관 1명)은 각
각 2023년 6월 24일까지 존속하
며, 2023년 6월 25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
표 3의 행정주사·사서주사·
공업주사·농업주사·식품위생
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농
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1명,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
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
주사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
지도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
정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
명, 별표 5의 공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공
업서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2명, 별표 7의
행정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
으로 본다.

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
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
보·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
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
기·공업서기·농업서기·농업
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명,
별표 5의 공업주사보 1명, 행정
서기 1명, 행정서기보·공업서
기보 또는 식품위생서기보 1명,
농업연구사 1명, 별표 7의 행정
서기 1명, 농업연구사 1명으로
본다.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 사무관 · 농업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 · <u>2</u>	· · <u>1</u>	-1
· · 행정주사 · 사서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식품위생주사 · 시 설주사 · 전산주사 ·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 · <u>44</u>	· · <u>45</u>	+1
· · 농업연구관	· · 1	· ·	
<u>공업연구관 · 농업연구관 · 수의</u> <u>연구관 · 보건연구관 또는</u> <u>환경연구관</u>	<u><신 설></u>	<u>1</u>	+1
· ·	· ·	· ·	

공업연구사·농업연구사·수의 연구사·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u>23</u>	<u>22</u>	-1
농업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8		
<u>농촌지도관</u>	<u><신 설></u>	<u>1</u>	+1
농촌지도사	<u>25</u>	<u>24</u>	-1
.	.	.	
.	.	.	

[별표 5]

국립농업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주사	<u>4</u>	<u>5</u>	+1
•	•	•	
•	•	•	
행정주사보	<u>8</u>	<u>7</u>	-1
•	•	•	
•	•	•	
농업연구관	<u>81</u>	<u>80</u>	-1
•	•	•	
•	•	•	
농업연구사	<u>249</u>	<u>250</u>	+1
•	•	•	
•	•	•	

[별표 6]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3</u>	<u>4</u>	+1
운전서기보	<u>10</u>	<u>9</u>	-1
•	•	•	
•	•	•	

[별표 7]

국립식량과학원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공업서기보	<u>3</u>	<u>4</u>	+1
운전서기보	<u>10</u>	<u>9</u>	-1
•	•	•	
농업연구관	<u>74</u>	<u>75</u>	+1
•	•	•	
•	•	•	
농업연구사	<u>160</u>	<u>159</u>	-1
•	•	•	
•	•	•	